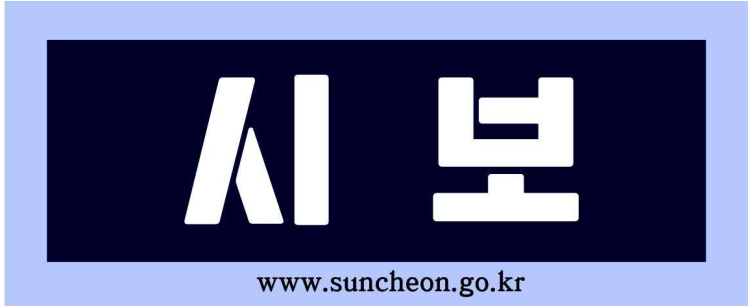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1660호 2025. 12. 15.(월)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25-26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
순천시 고시 제2025-2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4
순천시 고시 제2025-266호 도로명주소 고시	5
별량면 고시 제202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7
송광면 고시 제202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
황전면 고시 제202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5-2744호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
순천시 공고 제2025-2817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
순천시 공고 제2025-2839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

회 략											
-----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홍보실 (☎ 749-5729, FAX 749-4625)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25-26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순천시 왕지동 450번지(예정지번 : 92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5. 12. 15.

순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순천시 왕지동 450번지(예정지번 : 9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학교

나. 명칭 : 순천 정원초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15,004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삼향읍, 전남도교육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7. 11. 30.

순천시 고시 제2025-2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51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5. 12. 15.

순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51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로(소로 2-866호선)
 - 나. 명칭 : 순천 조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도로) 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3,842㎡(연장 230m, 폭 8~2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주식회사 영림개발 대표 김광웅
 - 나. 주소 : 전남 순천시 비래길 164(조례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8. 10. 20.

순천시 고시 제2025-26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신규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5.

순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초곡길 13 외 7건 (신규8)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749-55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건물번호 부여 조서

연 번	고시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우편 번호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순천시 상시면 초곡리 419	전라남도 순천시 상시면 초곡길 13	20251215	57980	자연마을 초곡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2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금명리 253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교통회룡전길 44-16	20251215	57936	자연지명 회룡전 진입노선으로 교통과 회룡전 인용	
3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내운리 474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신정길 47	20251215	57987	자연마을 신정출입로로 도로명부여	
4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9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선산길 66	20251215		선산마을로 들어가는 방향의 길로시 부여	
5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207-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순천로 414	20251215	57930	중앙으로 향하는 순천의 북쪽 관문으로써 순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심노선으로 이를 인용	
6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명리 245-5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심산로 293	20251215	57930	기존 도로명 인용 도로명 부여	
7	·	전라남도 순천시 상시면 홍신리 268-21	전라남도 순천시 상시면 당촌안길 31-3	20251215		당촌에서 외룡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당고개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8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매천로 370-1	20251215	00000	매천 황현선생의 호 사용	

순천시 별량면 고시 제202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5.

별 량 면 장

1. 하천의 명칭 : 동룡천 / 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나.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대룡저수지 유량 측정(유속계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1208 / 1㎡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478-2 / 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6. ~ 2030. 12. 15. (5년간)

순천시 송광면 고시 제2025-3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5.

송 광 면 장

- 다 음 -

1. 하천 명칭 : [지방하천]송광천, 장안천, 월광천
2. 점용자 성명 : 순천시장(하수도과)
3. 점용자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4. 점용 목적 : 송광 장안 외 4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5. 점용 위치 :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2346-13 외 7개소
6. 점용 면적 : 영구 82.24㎡, 일시 143.46㎡
7. 점용 기간 : 영구 2025. 12. 15. ~ 영구
일시 2025. 12. 15. ~ 2028. 6. 14.(30개월)

순천시 황전면 고시 제2025-6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5.

황 전 면 장

- 다 음 -

1. 하천 명칭 : 황전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지○○
3. 점용자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용서길
4. 점용 목적 : 경작(들깨, 콩)
5. 점용 위치 :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171번지
6. 점용 면적 : A=324m²
7. 점용 기간 : 2026. 1. 1. ~ 2030. 12. 31.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5-2744호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대학(생) 간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 안 제12조 대학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
- 안 제13조 지방대학 재정지원 범위 조항 추가
 - 6호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5.(월)~2026. 1. 5.(월) /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청(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choyy0328@korea.kr (팩스) 061-749-4418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061-749-6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각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를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을 각각 “대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대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학과의 상호협력력을 위하여 지방대학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순천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대학과 정책 협력 등에 필요한 의견 수렴
2. 지방대학과 지역 협력사업 발굴·추진 관련 논의
3. 그 밖에 대학·대학생과 행사 등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대관이나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중전의 제14조) 중 “회의”를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방대학”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u>고등교육법</u>」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u>소재하는 「고등교육법</u>」 제2조 ----- -----.</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담당 국장, <u>교육</u>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교육</u>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대학</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 ----- <u>대학</u> -----.</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p> <p>③·④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 이상</u>-----.</p> <p>③·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u>청취</u> 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방대</p>	<p>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 ----- ----- ----- - <u>듣거나</u>----- -----.</p> <p>제12조(대학협력협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방대학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순천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대학과 정책 협력 등에 필요한 의견 수렴 2. 지방대학과 지역 협력사업 발굴·추진 관련 논의 3. 그 밖에 대학·대학생과 행사 등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대관이나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p>	<p>제13조(재정지원) ① ----- -----</p>

현 행	개 정 안
<p>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② (생 략)</p> <p><u>제13조</u> (생 략)</p> <p><u>제14조</u>(수당 등) <u>회의</u>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15조</u> (생 략)</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4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p> <p><u>제15조</u>(수당 등) <u>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u>-----</p> <p>-----</p> <p>-----</p> <p>-----</p> <p>-----.</p> <p><u>제16조</u> (현행 제15조와 같음)</p>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4조”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집행에 있어”를 “집행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달성 할”을 “달성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를 “지원사업에서 거짓”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완료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13조 중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보조사업에 <u>소요되는</u> 경비의 사용방법</p> <p>4. 5. (생략)</p>	<p>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 제14조-- ----- ----- ----- ----- 적은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드는 ----- -----</p> <p>4.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p> <p>3. (생략)</p>	<p>제6조(재정지원의 제한) ----- ----- ----- 제13조----- -----.</p> <p>1. (현행과 같음)</p> <p>2. ----- 집행에서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방대학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 ----- ----- ----- -----.</p>

현 행	개 정 안
<p>1.·2. (생 략)</p> <p>3. 보조사업의 목적을 <u>달성</u>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p> <p>4. 그 밖에 <u>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u></p> <p>② (생 략)</p> <p>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u>30일 이내</u>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보조사업을 <u>완료한 때에는</u> 사업 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p> <p>2. (생 략)</p> <p>② (생 략)</p> <p>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u>」, 「<u>순천시 재무회계규칙</u>」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 <u>달성할</u> -----</p> <p>4. ----- <u>지원사업에서 거짓</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고 및 검사) ① -----</p> <p>----- <u>2개월 이내</u>-----</p> <p>-----.</p> <p>1. ----- <u>마친</u>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준용) -----</p> <p>----- 「<u>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p>

순천시 공고 제2025-2817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설·장비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인력·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산업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수도권 등 관외 콘텐츠 기업 순천 이전 및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 입주에 따른 지원기준 정비를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

2. 주요내용

- (제2조의2) 정의 규정 신설
- (제3조 제5호) 지원대상 제외기준 삭제
- (제5조 제4항) 상시고용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기준 완화
- (제7조 제2항) 문화콘텐츠산업 특성 반영 시설보조금 인정항목 확대

- (제7조 제3항) 고용 확대 장려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금액 상향
- (제7조 제4항) 정주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제8조 제1항) 보조금 지원시기 세분화
- (제10조 제3항)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근거 마련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15. ~ 2026. 1. 4.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콘텐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의견 제출할 곳 : (팩스) 061-749-4622, (전자메일) mjs2108@korea.kr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콘텐츠정책과(☎ 061-749-6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① “특별지원금”이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7조의2 및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례 특구 등에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입지·시설·고용보조금 또는 정주지원비를 말한다. 지원 한도는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으로 한다.

② “입지보조금”이란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③ “시설보조금”이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시설·장비(랜더팜 등)를 신·증설, 수선 또는 시로 이전하거나 필수 소프트웨어를 구매(구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④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의 신설로 상시고용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⑤ “정주지원비”란 본사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⑥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소재지를 말한다.

⑦ “사업개시일”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

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제도에서 정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간 근무시간은 35시간 이상으로 하며, 1주간 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상시고용인력을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7조제1항 중 “공장시설 등”을 “사업장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를 “토지 매입비”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명”을 “3명”으로, “6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전하는 직원”을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직원(사업개시일 이후 수도권 등 관외에서 신규 채용하여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② 시설보조금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시설·장비(랜더팜 등)를 신·증설, 수선 또는 시로 이전하거나 필수 소프트웨어 구매(구독)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2. 시설보조금은 사업개시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최대 50퍼센트 범위 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소재지	주소 :		전화 :		
업체담당자	직책 : 성명 :	전화 : 팩스 :	E-mail : 핸드폰 :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상시 종업원수	명	' 년도 연간 매출액	백만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 (이전)일			사업기간		
구분	교부일자	보조금	보험가입액	보험기간	비고
보조금		천원	천원		
수수료 지원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원	원	원	원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 첨 부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순천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2조의2(정의) ① “특별지원금”이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7조의2 및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례 특구 등에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입지·시설·고용보조금 또는 정주지원비를 말한다. 지원 한도는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으로 한다.</p> <p>② “입지보조금”이란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③ “시설보조금”이란 콘텐츠를 제작을 위한 필수 시설·장비(렌더팜 등)를 신·증설, 수선 또는 시로 이전하거나 필수 소프트웨어를 구매(구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④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의 신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제외)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p> <p>1. ~ 4. (생략)</p> <p>5. 「<u>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u>」에 따른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p> <p>제5조(상시고용인력 산정) ① ~ ③ (생략)</p> <p><신설></p>	<p><u>로 상시고용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u></p> <p>⑤ “정주지원비”란 <u>본사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u></p> <p>⑥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소재지를 말한다.</p> <p>⑦ “사업개시일”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제외)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5조(상시고용인력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 략) 제7조(특별지원금 지원내용) ① 입 지보조금은 <u>공장시설</u> 등을 신·증 설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 업단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다.</p> <p>② <u>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u> 등을 <u>신·증설 또는 수선하거나 시로</u> <u>이전하는 경우 신설, 증설, 이전,</u> <u>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u> <u>5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u> <u>있다.</u></p> <p>③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력 <u>10</u></p>	<p><u>준법」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에</u> <u>따른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u> <u>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u> <u>해당 제도에서 정한 평균 주당 근</u> <u>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력</u> <u>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u> <u>에도 1주간 근무시간은 35시간 이</u> <u>상으로 하며, 1주간 근무시간이 3</u> <u>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시간</u> <u>에 비례하여 상시고용인력을 산정</u> <u>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u> <u>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특별지원금 지원내용) ① --- ----- <u>사업장 등</u>----- ----- <u>토</u> <u>지 매입비</u>----- -----.</p> <p>② <u>시설보조금은 콘텐츠 제작을</u> <u>위한 필수 시설·장비(랜더팜 등)</u> <u>를 신·증설, 수선 또는 시로 이전</u> <u>하거나 필수 소프트웨어 구매(구</u> <u>독)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억 원</u> <u>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③ ----- 3</p>

현 행	개 정 안
<p>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 초과 인원 1인당 월 <u>60만 원</u>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p>	<p>명----- ----- ----- <u>100만 원</u>----- -----.</p>
<p>④ 본사 이전에 따른 정주지원비는 본사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u>이전하는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년간</u> 지원할 수 있다.</p>	<p>④ ----- ----- <u>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직원(사업개시일 이후 수도권 등 관외에서 신규 채용하여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u> ---.</p>
<p>제8조(지원시기)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u>입지 및 시설보조금은 사업개시일(착공신고 기준)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 후</u> <u><신 설></u></p> <p>2. 3. (생략)</p> <p>② 기타 본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제8조(지원시기) ① ----- ----- -----.</p> <p>1. <u>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u></p> <p>2. <u>시설보조금은 사업개시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u></p> <p>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② <u>그 밖에</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행확보 조치) ①·② (생략) <u><신 설></u></p> <p>③·④ (생략) <u><신 설></u></p>	<p>제10조(이행확보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최대 50퍼센트 범위 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별지 제7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10" style="text-align: center;">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기업명</td> <td colspan="3"></td> <td>대표자명</td> <td colspan="3"></td> <td>사업자번호 (법인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소재지</td> <td colspan="4">주소 :</td> <td colspan="5">전화 :</td> </tr> <tr> <td>입찰담당자</td> <td>직책 :</td> <td colspan="3">전화 :</td> <td colspan="5">E-mail :</td> </tr> <tr> <td>입찰번호 (영국표준 신청번호)</td> <td colspan="3"></td> <td>신청시 종업원수</td> <td>명</td> <td>연도 연출액</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이전 또는 신·중설 현(舊) 소재지</td> <td colspan="3"><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td> <td colspan="5">이전 또는 신·중설 후(新) 소재지</td> </tr> <tr> <td>사업자등록 (이전)일</td> <td colspan="3"></td> <td colspan="6">사업기간</td> </tr> <tr> <td>구분</td> <td>교부일과</td> <td>보증금</td> <td>보험가입액</td> <td>보험기간</td> <td colspan="5">비고</td> </tr> <tr> <td>보증금</td> <td colspan="3">원</td> <td colspan="6">원</td> </tr> <tr> <td>수수료 지원</td> <td>계</td> <td>국·도·비</td> <td>시·비</td> <td colspan="6">자부담</td> </tr> <tr> <td></td> <td>원</td> <td>원</td> <td>원</td> <td colspan="6">원</td> </tr> <tr> <td colspan="10">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td> </tr> <tr> <td colspan="10"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td> </tr> <tr> <td colspan="10">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td> </tr> <tr> <td colspan="10" style="text-align: center;">순천시청 귀하</td> </tr> </tbody> </table>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소재지	주소 :				전화 :					입찰담당자	직책 :	전화 :			E-mail :					입찰번호 (영국표준 신청번호)				신청시 종업원수	명	연도 연출액				이전 또는 신·중설 현(舊)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전 또는 신·중설 후(新) 소재지					사업자등록 (이전)일				사업기간						구분	교부일과	보증금	보험가입액	보험기간	비고					보증금	원			원						수수료 지원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원	원	원	원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순천시청 귀하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소재지	주소 :				전화 :																																																																																																																																																			
입찰담당자	직책 :	전화 :			E-mail :																																																																																																																																																			
입찰번호 (영국표준 신청번호)				신청시 종업원수	명	연도 연출액																																																																																																																																																		
이전 또는 신·중설 현(舊)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전 또는 신·중설 후(新) 소재지																																																																																																																																																			
사업자등록 (이전)일				사업기간																																																																																																																																																				
구분	교부일과	보증금	보험가입액	보험기간	비고																																																																																																																																																			
보증금	원			원																																																																																																																																																				
수수료 지원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원	원	원	원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순천시청 귀하																																																																																																																																																								

순천시 공고 제2025-2839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7조) 개발행위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보완
 - 개발행위허가 받은 공작물을 철거 후 재설치한 경우 경미한 행위로 인정
- (안 제29조의3) 성장관리계획 법정 계획화에 따른 운영 사항 반영
 - 성장관리계획 구역, 성장관리계획 내용, 재열람공고사항, 경미한 사항 제시
- (안 제38조)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규모 제한 운영 미비점 보완
 - 연면적 1,500㎡ 규모제한 중 지하층 연면적 제외(경관지구 지정 취지 고려)
- (안 제46조) 생태계보호지구 내 허용시설물 운영 미비점 보완
 - 공공 목적의 농어업기반시설 추가 허용

- (안 제66조) 분과위원회 기능 개정사항 반영
 -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내용 중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 사항 삭제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추가
- (안 제71조)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 합리화
 -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여비 지급 규정 마련
- (안 제9조, 제56조, 제56조의2)
 - 상위법령 개정사항 표시 정정
- (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15. ~ 2025. 1. 5.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wisb6755@korea.kr (팩스) 061-749-4664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계획과(☎ 061-749-6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3호”를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로,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시행규칙에 의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39조의2 제6항”을 “영 제39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6조 중 “이 조례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을 “영 제57조 제1항제1의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8호 가목”을 “제18호가 목”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제1의2호 라목”을 “제1의2호라목”으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 중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제2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선정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3.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4.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38조 중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연면적 (지상층)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 또는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3조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이 조례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46조3항1호 중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를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농어업기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 내지”를 “제1항제3호부터”로, “제13호의 규정에”를 “제13호에도”로 한다.

제54조제5호 중 “제2조 제8호라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를 “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6조의2 중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항 단서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 라목”을 “제2호 라목”으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다목”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제66조 2항 2호에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신설한다.

나. <삭 제>

다.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71조 중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시 공원사용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u>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u></p>	<p>----- ----- ----- <u>시행규칙에 의한다.</u></p>
<p>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u>법 제44조제5항의 규정</u>에 의한 공 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 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 른다.</p>	<p>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u>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u> ----- ----- ----- ----- ----- ----- -----</p>
<p>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u>영</u> <u>제39조의2 제6항</u>에 따라 공동구협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시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p>	<p>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u>영</u> <u>제39조의2제6항</u>----- ----- ----- ----- ----- -----</p>
<p>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u>영</u> <u>제41조제5항의 규정</u>에 의하여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p>	<p>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u>영</u> <u>제41조제5항에 따라</u> ----- ----- ----- ----- ----- ----- -----</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u>제1호</u> <u>가목</u>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 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p>	<p>1.----- <u>제1호</u> <u>가목</u>----- ----- -----</p>

현 행	개 정 안
<p>2.·3.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 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u>이 조</u> <u>례시행규칙</u>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 는 경미한 행위) <u>영 제53조의 규</u> <u>정에 의하여</u>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 다. (생 략) <u><신 설></u></p>	<p>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 ----- ----- ----- ----- <u>시행규칙</u> -----.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 는 경미한 행위) <u>영 제53조에 따</u> <u>라</u>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u> <u>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u> <u>(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u> <u>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u> <u>한다)</u> 1) <u>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u> <u>지 않을 것</u> 2) <u>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u></p>

현 행	개 정 안
<p>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p>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⑥ (생략)</p> <p>⑦ <u>제20조 제1항 제2호</u>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p> <p><u><신 설></u></p>	<p>----- -----.</p>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제20조제1항제2호</u>----- ----- -----.</p> <p><u>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u></p> <p>1. <u>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u></p> <p>2. <u>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p> <p>② <u>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③ <u>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u></p>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u>영 제72조제2항의</u> 규정에</p>	<p>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통처리계획</u> 2. <u>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u> 3. <u>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u> 4. <u>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u> <p>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u> 2. <u>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u>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p>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p>

현 행	개 정 안
<p><u>의하여</u>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u>연면적</u>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u>거쳐</u>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u>연면적(지상층)</u>----- ----- <u>거</u> ----- <u>쳐 공공기여 또는</u> ----- ----- ----- -----.</p>
<p>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u>영 제72조제2항의</u> 규정에 <u>의하여</u>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u>이 조례시행규칙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수 있다.</p>	<p>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u>영 제72조제2항에 따라</u> ----- ----- ----- <u>시행규칙</u>----- ----- -----.</p>
<p>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u>영 제75조의</u> 규정에 <u>의하여</u>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u>내지</u>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6. (생략) 	<p>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u>영 제75조에 따라</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 ----- ----- <u>부터</u> ----- 5.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1.·2. (생 략)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p> <p>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p> <p>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6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p>	<p>1.·2. (현행과 같음)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제2조제8호라목----- -----</p> <p>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 -----</p> <p>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 ----- ----- -----.</p> <p>제56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p>

현 행	개 정 안
<p><u>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u>제57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u> <u>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u></p>	<p><u><삭 제></u></p>
<p><u>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u></p> <p>① · ② (생 략) ③ 삭 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p>	<p><u>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66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p> <p>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개발분과위원회</p> <p>가. (생 략)</p> <p>나. <u>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③ ~ ⑥ (생 략)</p> <p>제71조(수당 및 여비) <u>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u>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다. <u>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71조(수당 및 여비) <u>영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u> ----- ----- ----- -----.</p>

